[별표 5]

감사인의 감사업무에 대한 품질관리수준 평가방법

□ 감사인의 감사업무에 대한 품질관리수준 평가는 계량지표(23개) 및 비계량지표(11개)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실시한다.

구 분	평가항목	계량	비계량
<역량지표>			
1. 회계법인내 품질에 대한 리더십 책임	1-① 품질관리 전담인력 비중 1-② 품질관리 전담인력의 업무부담	V V	- -
	1-③ 품질지향 내부문화를 위한 정책과 절차의 설계 및 운영	-	V
2.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	2-① 독립성 담당인력 비중 2-② 독립성 위반 2-③ 윤리기준 위반	V V V	- - -
	2-④ 독립성·윤리기준 점검 시스템 설계 및 운영	-	V
3. 의뢰인 관계 및 특정 업무의 수용과 유지	3-① 위험평가 사전검토 비율 3-② 회계감사업무 매출액 비중	V V	- -
	3-③ 사전위험평가 관련 정책과 절차의 설계 및 운영	-	V
4. 인적자원	4-①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한 교육훈련 4-② 감사인력 유지율 4-③ 소속 공인회계사의 업무부담	V V V	- - -
	4-④ 인적자원 관련 정책과 절차의 설계 및 운영 4-⑤ 업무시간 관리 관련 정책과 절차의 설계 및 운영	- -	V V
5. 업무의 수행	5-① 업무수행이사의 입증감사 전 투입시간 5-② 사전심리시간 5-③ 사전심리 담당자의 입증감사 전 투입시간 5-④ 전문가 활용	V V V V	- - - -
	5-⑤ 지시, 감독, 검토 관련 정책과 절차의 설계 및 운영 5-⑥ 사전심리 관련 정책과 절차의 설계 및 운영 5-⑦ 감사조서 관리 정책과 절차의 설계 및 운영	- - -	V V V
6. 모니터링	6-① 사후심리시간 6-② 전체 감사대상회사 대비 사후심리비율	V V	- -
	6-③ 사후심리 관련 정책과 절차의 설계 및 운영	-	V
<상태지표>			
7. 감리결과 등	7-① 금융감독원의 재무제표 등 심사·감리결과 7-②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재무제표 등 심사·감리결과 7-③ 재무제표 재작성 등 빈도 7-④ 품질관리시스템에 대한 감사인 감리결과 7-⑤ 개별감사업무에 대한 감사인 감리결과	V V V V V	- - - - -
	7-⑥ 품질관리시스템에 대한 감사인 감리결과 지적사항 발생원인 7-⑦ 개별감사업무에 대한감사인 감리결과 지적사항 발생원인	- -	V V
<동태지표>			
8. 감사품질 개선정도	8-① 개선권고사항 이행 소홀 및 미이행 8-② 품질관리수준 평가결과 및 개선정도	V V	- -

가. 계량지표 평가방법

(1) 역량지표

1) 회계법인내 품질에 대한 리더십 책임

① 품질관리 전담인력 비중 = 품질관리 전담인력 수÷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요건 최소 기준 품질관리업무 담당자 수

② 품질관리 전담인력의 업무부담 = 품질관리 전담인력 총 투입시간 ÷ 품질관리 전담인력의 가용시간

2)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

① 독립성 담당인력 비중 = 독립성 점검 대상자수 ÷ 독립성 담당 인력수

② 독립성 위반 = 최근 3년간 독립성 위반 조치건수

③ 윤리기준 등 위반 = 최근 3년간 윤리기준 등 위반 조치건수

3) 의뢰인 관계 및 특정 업무의 수용과 유지

① 위험평가 사전검토 비율 = 사전위험평가 실시 업무수 ÷ 사전위험평가 대상 업무수

② 회계감사업무 매출액 비중 = 회계감사업무 매출액 ÷ 회계법인 전체 매출액

4) 인적자원

①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한 교육훈련 = 등록공인회계사 1인당 평균 연수시간 및 의무연수 미이수자 비율

② 감사인력 유지율 = 1 － (최근 1년내 퇴사한 등록공인회계사수 ÷ 연평균 등록공인회계사수)

③ 소속 공인회계사의 업무부담 = 등록공인회계사의 총 감사업무시간 ÷ 등록공인회계사의 총 감사업무 가용시간

5) 업무의 수행

① 업무수행이사의 입증감사 전 투입시간 = 업무수행이사의 입증감사 전 투입시간 ÷ 업무

수행이사의 총 감사시간

② 사전심리시간 = 사전심리시간 ÷ 사전심리 실시 회사의 총 감사시간

③ 사전심리 담당자의 입증감사 전 투입시간 = 입증감사 전 사전심리시간 ÷ 총 사전심리시간

④ 전문가 활용 = 전문가 투입시간 ÷ 총 감사시간

6) 모니터링

① 사후심리시간 = 사후심리시간 ÷ 총 감사시간

② 전체 감사대상회사 대비 사후심리 비율 = 사후심리 실시 회사수 ÷ 감사대상 회사수

(2) 상태지표

① 금융감독원의 재무제표 등 심사·감리결과 = 지정제외점수(환산) ÷ 최근 3년간 종결된 심사·감리 건수

②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재무제표 등 심사·감리결과 = 지정제외점수(환산) ÷ 최근 3년간 종결된 심사·감리 건수

③ 재무제표 재작성 등 빈도 = 감사인이 감사한 상장·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 재무제표의 재작성 등 개수 ÷ 관련 감사보고서수

④ 품질관리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감사인 감리결과 = 최근 감사인 감리결과 품질관리시스템에 대한 개선권고사항 수

⑤ 회계감사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감사인 감리결과 = 최근 감사인 감리결과 개별감사업무에 대한 평균 지적사항 수

(3) 동태지표

① 개선권고사항 이행 소홀 및 미이행 = 최근 감사인 감리결과 품질관리시스템에 대한 개선권고사항 재지적사항 개수 혹은 이행 기한이 경과한 미이행사항 유무

② 품질관리수준 평가결과 및 개선정도 = 일정 수준 이상의 당기 품질관리수준 평가점수 또는 전기 대비 품질관리수준 평가점수 증가

나. 비계량지표 평가방법

(1) 역량지표 : 품질위험(품질관리시스템의 설계나 운영 미흡 등으로 감사품질에 잠재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위험)에 대응하는 통제활동의 설계나 운영과 관련한 미흡사항 여부에 따라 평가

1) 회계법인내 품질에 대한 리더십 책임

평가지표	세부 항목(품질위험)
품질지향 내부문화를 위한 정책과 절차의 설계 및 운영	대표이사 또는 경영진이 품질관리제도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한다.
	감사인이 구축한 품질관리 보상체계에 불구하고 영업성과 등에 따라 실질적인 보상이 결정된다.
	품질관리인력의 권한이 부족하여 적시에 품질 관련 이슈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없다.
	품질관리인력의 경험이나 전문지식 등 역량이 부족하거나 업무가 과중하여 품질관리 업무가 부실하게 이루어진다.
	구성원의 직책 및 직급별로 권한, 의무 및 역할이 명확하지 않다.

2)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

평가지표	세부 항목(품질위험)
독립성·윤리기준 점검 시스템 설계 및 운영	독립성 점검시 필요한 필수 정보를 수집하지 아니한다.
	독립성 준수의무자가 독립성 신고를 누락하거나 지연하여 신고한다.
	독립성 준수의무자가 제출한 독립성 확인서나 독립성 시스템에 입력한 정보를 제출시한 이후에 임의로 수정할 수 있다.
	독립성 준수의무자 목록에서 누락된 대상자가 있다. 독립성 준수대상 회사 목록에서 누락된 회사가 있다.
	동일한 이사 혹은 소속 공인회계사의 교체의무를 위반하여 연속하는 회계연도의 감사업무를 수행하게 한다.
	독립성 준수의무자가 신고한 내용이 독립성 검토결과에 반영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내용과 다른 내용을 반영하여 업무의 수임·유지가 결정된다. 독립성에 대한 검토 없이 업무의 수임·유지가 이루어지거나, 업무의 수임·

평가지표	세부 항목(품질위험)
	유지 결정 이후 독립성에 대한 검토가 완료된다. 독립성 훼손이 우려되는 비감사업무를 수임한다.
	독립성이 훼손되거나, 관련 법규 등을 위반(주식소유 등 이해관계, 재무제표 대리작성, 담당이사 등 교체의무 위반 등)하였음에도 품질관리실 등이 이를 발견하지 못한다.
	독립성 위반이나 독립성 관련 감사인의 정책 및 절차위반 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적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3) 의뢰인 관계 및 특정 업무의 수용과 유지

평가지표	세부 항목(품질위험)
사전위험평가 관련 정책과 절차의 설계 및 운영	위험평가를 수행하지 않거나, 위험평가결과를 고려하지 않고 업무의 수임·유지가 결정된다. 위험평가가 감사계약 체결 후 완료된다.
	위험평가가 개인별, 사무소(본점, 분사무소 등)별로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 평가의 일관성이 결여되거나 부적절한 업무의 수임·유지가 이루어진다.
	위험평가에 필요한 기초정보 입력시 작성자의 부주의나 착오 등으로 인해 사실과 다르거나 부적절한 내용이 입력된다.
	감사인의 업무수행능력(가용자원, 산업전문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업무의 수임·유지를 결정한다.
	업무수임과 관련하여 이슈가 식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를 수임하기로 결정한 경우 그 이유를 문서화하지 않거나, 감사업무 수행시 감사계획에 반영하지 않는다.
	업무수용·유지 결정 이후 발생한 중요한 사항이 업데이트되지 아니한다.

4) 인적자원

평가지표	세부 항목(품질위험)
인적자원 관련 정책과 절차의 설계 및 운영	감사대상기업이 속한 산업의 특성, 업무수행이사 및 참여자의 산업전문성이나 경험, 권한 등을 고려하지 않고 감사업무가 배정된다.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 업무수행이사에 대한 업무배정이 이루어진다.
	업무수행이사나 업무참여자에게 과다한 업무(감사 및 비감사업무)가 배정된다.
	직무정지, 감사업무참여제한, 상장회사 감사업무제한 등 조치를 받은 구성원이 감사업무가 제한되는 회사의 감사업무에 참여한다.
	회계처리기준, 회계감사기준 등 전문직 기준과 관계법규 등이 제·개정되었음에도 소속 공인회계사 등이 이를 숙지하지 못한다.
업무시간 관리 관련 정책과 절차의 설계 및 운영	업무수행시간(time report)의 입력, 수정, 승인권한 등의 업무분장이 부적절하다.
	구성원별, 수행업무별 업무수행시간이 지연 입력되거나 누락된다.

평가지표	세부 항목(품질위험)
	구성원별, 수행업무별 업무수행시간이 과다 또는 과소 입력된다.
	구성원별, 수행업무별로 집계된 업무수행시간을 임의로 수정할 수 있다.
	내부 시스템상 집계된 감사시간과 감사보고서상 감사시간이 불일치한다.
	감사시간 이외 업무시간(비감사업무, 행정업무 등)을 집계하지 않아 집계된 시간의 완전성을 확인할 수 없다.

5) 업무의 수행

평가지표	세부 항목(품질위험)
지시, 감독, 검토 관련 정책과 절차의 설계 및 운영	업무수행참여자가 필수적이거나 중요한 감사절차를 누락하거나 소홀히 수행한다.
	업무담당이사나 참여자 등이 감사업무 수행시 감사인의 품질관리정책을 준수하지 아니한다.
	감사대상 기업 및 동 기업이 속한 산업의 특성이 감사계획 및 감사절차에 반영되지 않는다.
	감사위험의 평가결과 등을 감사계획에 반영하지 않고, 입증감사절차를 수행함으로써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지 못한다.
	감사대상회사의 회계 관련 전산시스템이 복잡하고 중요함에도 감사계획이나 감사절차에 이러한 사실을 반영하지 않아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가 수집되지 않는다.
	감사업무 수행시 담당이사가 지시, 감독, 검토와 관련하여 충분한 시간을 투입하지 아니한다.
사전심리 관련 정책과 절차의 설계 및 운영	관련 기준, 내규 등에 따라 사전심리대상 회사로 분류되어야 할 회사가 사전심리대상 회사 목록에서 누락된다.
	사전심리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감사보고서 발행 또는 감사보고서 파일의 유출 등이 이루어진다.
	전문성, 경험 등이 부족하거나 권한 없는 인력이 사전심리를 담당한다.
	사전심리와 관련하여 품질관리검토자의 객관성이 유지되지 않는다.
	품질관리검토자가 사전심리시 필수적이거나 중요한 내용에 대한 검토 등을 누락하거나 감사인의 품질관리검토 관련 정책에 따르지 않고 사전심리를 수행한다.

평가지표	세부 항목(품질위험)
	사전심리와 관련한 최소한의 시간투입이 보장되지 않아 충분한 품질관리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감사조서 관리 정책과 절차의 설계 및 운영	감사조서가 취합되지 않거나, 관련 기준에서 요구하는 시한을 경과하여 취합이 완료된다.
	취합된 감사조서를 취합기한 이후에 임의로 수정할 수 있다.
	감사조서리스트와 실제 보관하고 있는 감사조서 목록, 수량 등이 일치하지 않는다.
	권한 없는 자가 감사조서에 접근할 수 있거나 무단반출이 가능하다.

6) 모니터링

평가지표	세부 항목(품질위험)
사후심리 관련 정책과 절차의 설계 및 운영	전문성, 경험 등이 부족하거나 권한 없는 인력이 사후심리를 담당한다. 사전심리담당자 혹은 업무수행이사가 사후심리를 담당하거나 기타의 이유로 사후심리담당자의 객관성이 보장되지 않는다.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 사후심리대상이 선정된다. 사후심리대상 선정시 모집단이 완전하지 않다.
	사후심리결과가 업무수행이사 및 법인내 적합한 개인들(예: 최고경영자, 품질관리실장 또는 적합한 경우 사원총회 등 포함)에게 보고되지 않는다.
	사후심리와 관련한 최소한의 시간투입이 보장되지 않아 충분한 품질관리검토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사후심리시 필수적이거나 중요한 내용에 대한 검토 등을 누락한다.
	사후심리결과 나타난 미비점 등에 대한 수정조치 권고사항이 미이행되거나 그 이행내용이 발견된 미비점 등을 개선하기에 부적합하다.

(2) 상태지표 : 개선권고사항의 질적형태를 분석하여 평가에 반영

① 품질관리시스템에 대한 감사인 감리결과 지적사항 발생원인

② 개별감사업무에 대한 감사인 감리결과 지적사항 발생원인